

		시 민			
문서번호	소방행정과-2300	주임	행정팀장	소방행정과장	소방서장
결재일자	2023. 3. 3.	조성종	이회영	代이회영	03/03 박찬호
공개여부	비공개(6)	협 조			
방침번호					



-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 발굴을 위한 -

# 2023년 소방서장 표창 계획



2023. 3.

## 양 천 소 방 서 (소방행정과)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<b>1. 일반사항</b>				
<b>정책일반</b>	◆ 제반 법규와 실태,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(법령, 규칙, 통계 빅데이터, 시민의견 등)	■	□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(갈등, 약자, 일자리, 안전, 탄소 감축 등) ※ 약자 :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		■	
	◆ 정책·계획·전시물·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?	□	■	
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	■	□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(경제·사회·환경 등)	□	■	
<b>2. 약자와의 동행</b>				
<b>목 적</b>	◆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?	□	■	
	◆ 주거, 생계, 의료, 교육,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?	□	■	주거/생계/의료/ 교육/기타
	◆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? (단순 : 어려움 즉시 개선 / 사다리 :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)	□	■	단순지원/ 사다리지원
	◆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,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?	□	■	
<b>계획수립</b>	◆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?	□	■	
<b>집행·홍보</b>	◆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?('약자' 낙인효과, 역차별 등)	□	■	
	◆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?	□	■	
<b>평가·환류</b>	◆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(산출, 과정, 성과 등)는 마련하였는가? 아닐 경우,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·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?	□	■	

-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 발굴을 위한 -

# 2023년 소방서장 표창 계획

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발굴하여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계획 임.

## I 관련 근거

- 본부소방행정과-23853(2013.8.23)호 『소방관서장 표창 운영계획』
- 본부소방행정과-3370(2023.2.6.)호 『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알림』

## II 표창 개요

- 표창권자: 양천 소방서장
- 표창대상 및 수량

표창대상	인원	표창명	인원	표창시기	부상
소방공무원 (정원: 278명)	소방공무원 정원의 10%이내 (28명 이내)	직무유공	포상인원 범위 내	수시	1인 10만원 이내 상품권
		소방의 날 유공	13명 내외	11월 중	1인 10만원 이내 상품권
		연말 소방행정유공	13명 내외	12월 중	1인 10만원 이내 상품권
의용소방대원 (정원: 200명)	의용소방대원 정원의 15% 이내 (30명 이내)	직무유공	포상인원 범위 내	수시	없음
		소방의 날 유공	15명 내외	11월 중	
		연말 소방행정유공	15명 내외	12월 중	
기타 민간유공자	정기포상(소방의날) 및 특수 공적 발생시	소방활동 업무유공	제한없음	필요시	없음

※ 단체 표창장 및 상장,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

※ 부상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1인 100,000원 이내 상품권(도서문화상품권,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등)을 수여하며,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없음.

## □ 예산배정 현황

구 분	배 정 액	예 산 과 목	비 고
표창 포상금	2,800,000원	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,소방직무능력제고, 포상금(100-303-01)	※ 2023년 소방서장 포상금 및 표창장 제작 예산배정
표창장 제작비	490,000원	기본경비,기본경비,사무관리비 (100-201-01)	

## □ 표창종류

## 〈 표 창 장 〉

-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,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
-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
-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

## 〈 상 장 〉

-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부서, 개인 및 단체
-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부서, 개인 및 단체

## 〈 감 사 장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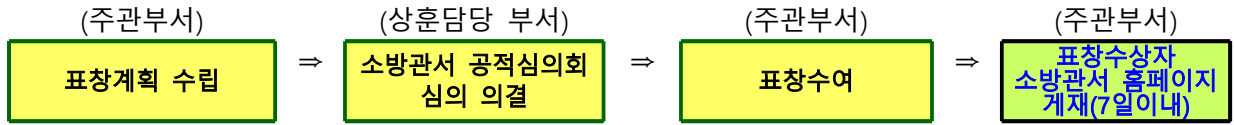
- 시정 및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
-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

## □ 표창시기: 정기(소방의 날 및 연말 유공 등) 및 수시

## □ 선발기준 ※ 세부기준은 붙임 1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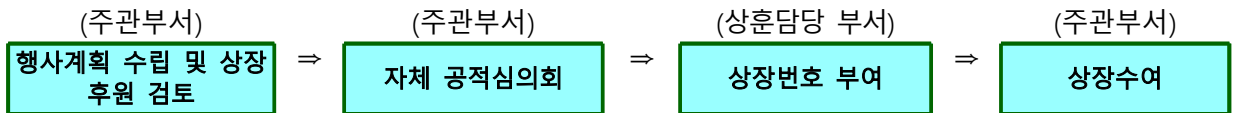
- 공·사생활 등이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·공직관·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·성실한 공무원(단체)
-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개선 및 행정 능률향상,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공무원(단체)
-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(단체)
-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·구급·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(단체)
-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(단체)

- **표창절차**: 발굴 및 추천(부서장) → 공적심의(주관·상훈부서) → 결정·수여
  - 표창장 및 감사장



※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.

- 상 장



-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
  - ☞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(담당)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
  - ☞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

-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 :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

- 시행일: 2023. 3. 월부터 ~ 별도 계획 수립시 까지

### III 선 발 절 차

-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

-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·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
  - ※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
- 추천권자 : 부서장 (조사자-주무팀장 및 안전센터 대장 등)
- 추천제외자 : 붙임 참조

- 공적심의회 구성

- 구성단위 : 소속 기관(부서)
- 구 성 :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
  - ※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
- 의 결 :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(필요시 서면 의결 가능)

## □ 표창 관련서류

### - 공무원

연 번	서 류 명	작성부서
1	공적심의회결서	소방행정과
2	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	소방행정과
3	공적조서(붙임 3)	추천부서
4	표창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	추천부서
5	인사기록카드사본	소방행정과

### - 민간인

연 번	서 류 명	작성부서
1	공적심의회결서	주관 부서
2	공적조서	추천 부서
3	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	추천 부서
4	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	주관 부서
5	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	주관 부서

## □ 표창 취소

- 표창 추천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
- 표창이 수여된 이후,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,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·의결을 하도록 함
-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

## IV 행정 사항

- 여성, 하위직 소수 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
-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
-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

-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(단체 포함)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부상 제공 금지
-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(행정팀 등)에서 총괄하며,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
- 표창 수여 후 표창대상 기록 관리(상훈부서)
- 기타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(인사과)」 및 「시장 표창 추천 계획(소방행정과)」, 「시민표창 운영계획(소방행정과)」에 의거 운영

#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

## I 선발기준

### ◇ 공통기준

- 국가관·사명감·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
- 불의 배격 및 친절·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
- 성실·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

### ◇ 소방공무원

- 화재진압·인명구조·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
  -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
- ※ 칭찬(감사) 및 창의·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시 우대

### ◇ 의용소방대원·소방관계인 등

-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
-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
- 화재진압·예방, 소방홍보·교육·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
- 자체소방대 정비, 소방시설 점검·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



## II 추천 제한

### ◇ 공통기준

1년 이내 서장이상 표창 수상자

### ◇ 공무원

-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(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)
  -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  -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 사면자
  -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
  - 훈계·경고·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
  -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  -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, 수사 중인 자
  - 현 기관(소방서) 전입 6개월 미경과자
  -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
  - 기타 공·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※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(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)

#### ◆ 현저한 공적 사례(예시) - 증빙자료 제출

- 1)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
- 2)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, 소방활동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
- 3)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

## ◇ 의용소방대원·소방관계인 등 민간인

### 【법령에 따른 부적격자】

- ❖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- ❖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❖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❖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
- ❖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- ❖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범인 및 그 임원 등

### 【일반적인 추천 제한】

- ❖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
- ❖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❖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(사회적이슈,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)
- ❖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(직)원
- ❖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